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983호  
2024. 11. 29.

- 타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 지원정책 현황과 시사점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4.1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타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 지원정책 현황과 시사점

- 기술투자 및 전환 역량 취약한 중소기업 및 핵심 후방산업 성장 지원 -

### ■ 조선산업 : 스마트 조선소 구축과 함께 중소기업·후방산업 디지털화·자동화 지원

- '20년 중반까지 침체를 지속했던 글로벌 선박시장은 '21년부터 상황이 회복되었으며, 우리나라 조선산업 수주 역시 '21년 8년 만에 최대실적을 기록하였음.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교체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기술 선점, 생산 공정 디지털화를 위해 주요국이 경쟁중임.
- '22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통해 시장·기술·생태계 경쟁력 확보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디지털 전환, 대·중소 협력, 그리고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계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이 포함되었음.
  - (스마트 야드) 스마트 야드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형 조선사 및 기자재 업체를 위해 로봇 용접·도장기술, 자재 무인 이송 시스템 등 공정별 기술개발과 효율적인 생산관리 및 협업을 위한 공정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을 추진함('24~'29, 2,800억원 규모).
  - (협력 플랫폼) 대형 조선사, 연구원 등이 보유한 생산기술을 중소 조선사, 기자재 기업이 활용가능한 기술로 리모델링하여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
  - (기술이전) 기업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형 3사의 친환경 핵심기술의 중형 4사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중소형 선박 수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기술 컨설팅) 중소형 조선사의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지원을 통해 중소형 조선사의 해외수주 영업을 지원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통해 '28년까지 7,1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조선분야 미래 초격차 기술의 선점, 제조 시스템의 고도화, 그리고 법·제도 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중소형 조선사·후방기업의 전환 지원정책이 포함되었음.
  - (디지털전환·스마트화)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설립을 통한 중소형 조선사의 설계·생산 등 디지털 전환 체계 마련 : 생산 자동화 실증, 디지털 전환 생산, 성능평가 장비 도입을 통한 디지털 전환 생산공정 구축

- (로봇개발 및 지원) 용접 협동로봇, 도장 자동화 로봇, 소조립 공정 생산·관리 자동화 로봇 등 선박 건조 특화 로봇 개발 및 80개 이상 중소형 조선사 대상 로봇 구매 보조, 시스템 설치 및 검사 패키지 지원
- (후방산업 디지털 전환) 절단, 용접 등 철의장 제조산업의 전주기적 공정 자동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조선해양 제조 공정 디지털 전환 실증센터'를 구축, AI기반 유연공정 자동화 장비 구축 및 기자재 보급

## ■ 자동차산업 : 부품기업 등 후방산업의 디지털 전환, 미래차 전환 지원

- '21년 정부의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은 기존 지원정책이 선도기업에 집중된 점을 감안, 후발·소규모 기업을 위한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미래차 중심 혁신, 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함.
  - (역량 강화) 완성차 기업의 미래차 전환 교육을 통해 사업전략 수립 지원, 공공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 생산성·품질 향상, 장비운영 등 기술 노하우 전수로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역량 강화
  - (오픈 이노베이션) 부품기업의 IT 희망 협력 분야를 토대로 스타트업 발굴·연계하는 'Smart Bridge' 프로젝트 추진, '자율주행산업협회'를 통해 IT기업-부품기업간 공동 R&D, 전략적 제휴, 표준화 등 협업 촉진
  - (디지털 전환) 전장부품 성능데이터 및 미래차 운행데이터 축적·공유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부품산업 가치사슬 공통문제 해결 지원
  - (제조공정 혁신) 정부·완성차기업·부품기업·협력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 공장 보급, 디지털 트윈을 접목한 디지털 설계환경 구축 등 자동차 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 추진
- 울산광역시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특화 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 디지털 혁신전환 프로젝트('24~'26)'를 추진, 미래차 전환에 대비한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의 맞춤형 성장지원을 추진중임.
  - (DX혁신) 차체, 의장 분야 스마트 공장 활용 등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완성차 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성장지원 및 사업재편) 배터리, 전장 등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스마트 공장 지원, 엔진, 파워트레인 분야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재편 지원

## ■ 전체 가치사슬 혁신 도모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디지털화·자동화 전략 필요

- 정부는 '17년부터 건설 생애주기의 디지털화,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안전성 향상,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건설산업의 스마트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으로 본격화되었으며, 국가 R&D사업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20~‘25)’을 통한 혁신기술 확보,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통한 기술기업-건설기업 간 상호협력 기반 마련 등이 추진중임.
- 그러나 건설산업의 디지털화·자동화 전략은 스마트 분야 혁신기술 확보를 우선하여 기술 활용기반 정비는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기술의 중점 사용 및 확산주체인 중견·중소 건설기업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은 고정설비에서 반복생산이 이뤄지는 산업이며, 건설업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관련 기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원정책의 수립 배경 및 방향은 다를 수 있으나, 산업 차원의 혁신지원을 위한 접근은 벤치마킹이 필요함.
- 자체적인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 기술 개발 역량이 미흡한 중견·중소건설기업, 핵심 전후방 기업의 역량 향상,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박희대(부연구위원 · hpark@cerik.re.kr)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4.11)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yjjun@cerik.re.kr)

- ◎ 지난 약 1개월(10.28.~11.21.)간 입법부에서는 총 842건의 법안이 발의됨. 이 중 건설산업 관련 주요 법률의 경우 통상 대비 많은 55개의 법률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최근 급격히 위축된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한 직·간접적 산업 지원 법안이 예년과 달리 다수 발의되었기 때문임.
- ◎ 이달의 건설 관련 입법의 다른 특성으로는 산업 구성원 간 이해관계별 참여한 입장 차가 존재하는 입법안 또한 다수 발의되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예상됨.

## 이슈 1: 우려되던 연동제...제도 도입 1년 만에 적용 대상 입법 확대 시도 잇달아

- ◎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자(수탁기업)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작년 10월 도입된 하도급 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연동제)의 경우 산업 간 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제도 도입에 따라 원가산정 기준 상이 및 유사 제도(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와의 중첩 등으로 인해 건설 산업 내 정착이 상당 부분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1년이 지난 이달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 건설업 부문’을 제작·배포하였으나 여전히 모호하거나 현장 내 정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일선에서 많은 혼란을 겪는 상황임.
- ◎ 또한, 도입 당시 연동제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를 상회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 급격한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영세한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법 사유(행정부·입법부 모두 동일 입장)를 명확히 제기함.
- ◎ 허나 제도 도입 1년이 지난 현시점 원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른 추가적인 물가변동 비용에 대한 보전을 제도 내 포함하기 위한 입법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 지난달까지 22대 국회에서 연동제 대상 범위 확대를 담은 입법안은 총 4건의 법률이 입법 제안되어 계류 중인 상황(의안번호 제1915호, 제2927호, 제3798호, 제4734호)으로 모두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너지 비용 및 운반비)를 담고 있음.
  - 이와 유사한 입법안이 이번 달에도 계속되어 발의됨.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5697호)의 경우 또한 연동제 적용 대상에 기존 주요 원재료 외 전기료·가스비 등의 에너지 비용과 운송비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 이 외에도 이번 달의 경우 연동제 적용 대상에 인건비(노무비)를 추가하는 입법안도 2건이 법안 발의됨.

- 이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안번호 제5044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임금 상승 시 그 변동분을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함.
- 이와 달리 이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의안번호 제5029호)의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노무비를 포함하는 입법안을 제안함.
- ◎ 제도 도입 이제 1년이 지나 아직 현장 내 정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 상기와 같은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입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는 점은 원 제도 도입 목적을 훼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상황임.
  - 특히 건설업의 경우 타 산업과 달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타 법률과 제도 등을 통해 중층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사실상 중복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및 원도급자 일방의 추가적 손실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됨.
- ◎ 이러한 예상 문제를 고려할 때 전(全) 산업에 대한 획일적 제도 적용이 아닌 산업 특성을 고려한 개별 산업별 연동제 적용 대상과 범위·방법의 차등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목적일 것으로 사료됨.

## 이슈 2: 쌓여가는 동일 법안 ‘예타 기준 완화’...입법 조속 결정 필요 시점

- ◎ 이달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조사 대상 기준 상향 또는 특정 대상 사업 면제)에 대한 입법이 반복되어 22대 국회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총 12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 또는 B/C 분석 시 편익 가중치를 부여하는 관련 입법이 계류 중인 상황임.
  -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08호)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 부여를 법률에 규정하는 입법안을 제안함.
  - 이와 유사하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재정법이 아닌 특별법을 통한 입법 시도도 이어짐. 장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98호)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의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를 위해 예타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 및 조사 방법 등의 요건을 재정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함.
  - 이와는 달리 송언석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07호 및 제5072호)의 경우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등) 완화 입법안을 제안함.
- ◎ 반복적으로 유사 입법안이 계속하여 발의되고 장기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충분한 숙의(熟議)가 이루어진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와 대형 공공공사의 빠른 사업 추진과 대상 공사 확대 이점 사이 재정 당국의 전향적 검토와 입법부의 합리적 방향 모색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함.



### 이슈 3: 최소한의 공사비 보장 순공무원가 낙찰자 결정 배제 제도

- ◎ 현행 계약법에서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적격심사 대상 공사) 발주자가 산정한 최소한의 원가를 보장하여 부실공사 및 덤핑입찰 방지를 위한 '순공무원가 낙찰자 결정 배제 제도'를 운영 중임.
  - 국가계약의 경우 '20년 5월부터, 지방계약의 경우 '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순공무원가 낙찰자 결정 배제 제도는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와 순공사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순공무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 시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제도임.
  - 최근 건설 공사비 급증에 따라 적격심사 시 낙찰자 도급대금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낙찰 하한율이 장기간 고정('95년 이후 고정)되어 있음에 따라 순공무원가 낙찰자 결정 배제 제도는 최소한의 공사비를 보장해 주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일례로 최근 적격심사로 입찰 공고된 약 3만 건의 공공공사 중 동 제도를 통해 낙찰 하한율보다 높은 투찰가로 낙찰된 공사의 비중이 약 1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 이에 최근 현행법이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한 순공무원가 낙찰자 결정 배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는 법안[「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5698호, 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됨.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국가계약의 경우 간이형 중심제 대상 구간으로 해당 구간의 공사비 부족에 따른 문제가 최근 심화된 상황인 점과 더불어 지방계약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 공사 범위로 낙찰 하한율이 최근 간이형 중심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종합 고려할 때 입법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기에 빠른 입법 추진을 희망함.

### 이슈 4: 건설업 오랜 병폐 원도급자 대위변제...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되나

- ◎ 건설산업의 경우 하도급자의 임금 유용·체불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도급자의 연대 책임 의무 부여와 전체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부담 경감을 위해 원도급자가 이미 해당 비용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추가로 대위변제(代位辦濟)하여 원도급자의 추가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대표 산업이라 할 수 있음.
- ◎ 이러한 관행적 문제 해소를 위해 전(全) 산업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됨(의안번호 제5214호,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 법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 발주 사업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의무 부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자의 임금 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 통보 의무 부여의 책무를 부여함.
- ◎ 하도급자 채용 근로자에 대한 대위변제가 만연한 건설산업의 경우 상기 법률 개정안만으로는 원천적인 문제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어 의미 부여가 가능함.
  - 다만, 이번 입법안을 계기로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채용 근로자에 대한 대위변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건설산업 맞춤형 추가 제도 보완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로 적용되기를 희망함.

## ■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4.10.28.~'24.11.21)

※ **규제 강화** 표기의 경우 건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입법안

법률명	주요 내용
「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756호(유용원 의원 등 10인)] ('24.11.2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의 건축·대수선 등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기초지자체의 허가 대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폐율·용적률 및 건물 층수에 대하여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일반부지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li> <li>- 이에 군 주거시설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용적률·건물 층수 제한에 따른 고층화 제약으로 인해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군 주거시설이 충분치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li> <li>- (제안방향) 군부대 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해 건폐율·용적률·건물 층수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의2 신설)</li> </ul> </li> </ul>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753호(유용원 의원 등 11인)] ('24.11.2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초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신자 숙소 등 군 숙소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사에 거주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국방·군사시설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 혼란 방지 및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li> </ul> </li> </ul>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732호(권영진 의원 등 10인)] ('24.11.2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국토부는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정주체를 광역지자체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 준용 필요</li> <li>- (제안방향①) 특화단지의 지정·육성 등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안 제3조의3) 하는 한편,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4조 및 안 제8조), 특화단지의 지정·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안 제23조)</li> <li>- (제안방향②)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국토부 및 광역지자체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안 제29조)</li> </ul> </li> </ul>
「산업안전 보건법」 <b>규제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708호(박해철 의원 등 10인)] ('24.11.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도 하여금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 원인으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미진했거나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변경, 안전보건계획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반영 의무 및 안전보건계획서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안 제36조제2항 및 제175조)</p>
<p>「국가 계약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698호(정성호 의원 등 10인)] ('24.11.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를 합한 비용인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 배제하도록 규정 중이나, 최근 물가 급등 상황에서도 입찰자 수가 적은 실적 제한 공사와 고난이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의 경우 투찰이 낙찰가능 하한액에서 벗어나는 실정이고 이는 곧 순공사원가 미달 투찰은 곧 적자 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에 해당하기에 현행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중인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자 결정 배제의 대상 공사 범위 확대 필요</li> <li>- (제안방향)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안 제10조제3항)</li> </ul> </li> </ul>
<p>「하도급법」</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697호(김남근 의원 등 16인)] ('24.11.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기료, 가스비, 운송비 등은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이유②) 연동제 적용 회피를 위해 연동 배제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단가계약 등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기에 개정 필요</li> <li>- (제안이유③)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단가와 계산식 등을 사전 명확히 제공치 않고 자의적 '공수'를 책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하도급대금 삭감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이유④) 현행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해당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금보다 부당하게 낮게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현장 혼란이 발생하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이유⑤) 현행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또는 5배 이내)를 도입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 시 평균적 배상액이 손해 인정액의 1.5배 이하이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①)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과 운송비용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원재료 등'으로 개정(안 제2조제16항·제17항)</li> <li>- (제안방향②) 현행법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연동제 미적용을 합의하는 경우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하도급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하고(안 제3조제4항제4호),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하도급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도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연동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3조제4항제3호), 연동제 적용 회피를 위한 편법행위 방지를 위해 기간과 하도급대금에 대한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안 제3조제5항제1호),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미연동을 요구·유도하는 행위 금지(안 제3조제5항제2호)</li> <li>- (제안방향③) 하도급거래계약 서면에 단순히 하도급대금만 기재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 단가, 목적물의 종류, 물량 상세내역 및 생산성 등의 지수 등 기타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사항과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안 제3조제2항제1호)</li> <li>- (제안방향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판단 시 일반적 거래에서 사용되는 대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추정하여 하도급자 보호 강화(안 제4조제3항)</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방향⑥)</b> 기술탈취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원도급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하도급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규정(안 제35조)</li> </ul>
「도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674호(민홍철 의원 등 10인)] (‘24.11.19.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비용은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단, 공사 대상 도로가 일반국도인 경우에 한해 국가가 공사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기존 고속국도에 추가 연결로(IC)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나, 고속국도 접근성 제고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책무에 해당하고, 해당 공사에 국가지원을 배제하는 경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 간 고속국도 접근성 차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b> 기존 고속국도 연결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국가비용 보조 대상에 포함(안 제92조제2항)</li> </ul> </li> </ul>
「주거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671호(이춘석 의원 등 10인)] (‘24.11.19.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은 국토부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광역지자체가 국토부가 수립한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도록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는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사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규정 중임. 허나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주택정책 추진으로 인해 수도권 난개발을 초래하고 지방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치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b> 국토부가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의 내용 중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아닌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에 한정토록 하고, 지방정부의 주택 건설·공급 및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사전협의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주택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2항 신설 등)</li> </ul> </li> </ul>
「공공주택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668호(이춘석 의원 등 10인)] (‘24.11.18.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공공임대주택 계획은 하향식 계획으로 지역 수요를 효과적으로 추정하지 못해 비효율 또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에 개정 필요</li> <li>- <b>(제안방향)</b>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광역지자체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광역지자체에게 위임(안 제53조)</li> </ul> </li> </ul>
「주택도시기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667호(이춘석 의원 등 10인)] (‘24.11.18.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①)</b>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공공택지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해상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효과적인 재원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각 지방의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요구와 「지방공공기업법」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주택공급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개선 필요</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②)</b>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광역지자체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2024년 4월 기준 정비기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b>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용자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9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제2호라목 및 제3호라목 신설)</li> </ul>
<p>「도로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666호(민홍철 의원 등 10인)] ('24.11.18.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인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 비용과 관련하여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해 도로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기존 고속국도에 IC(연결로)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IC설치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나, 고속국도 통행 수요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원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특정 지역의 고속국도 통행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고속국도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통행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추가 IC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b> 기존 고속국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연결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개정(안 제52조제6항 신설)</li> </ul> </li> </ul>
<p>「건축법」</p> <p><b>규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618호(박용갑 의원 등 16인)] ('24.11.15.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에는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해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 전달 또는 진동 영향을 고려한 흡음 설계 등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한 상황으로 최근 3년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만7천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웃 간 분쟁으로 비화해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b> 건축물 설계자에게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안 제23조제2항)</li> </ul> </li> </ul>
<p>「지방세 특례 제한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610호(윤재욱 의원 등 11인)] ('24.11.15.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은 아파트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하거나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등 조건에 따라 차등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기에 서민 주거 안정 및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임대주택 등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 연장 필요</li> <li>- <b>(제안방향)</b>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31조)</li> </ul> </li> </ul>
<p>「주택법」</p> <p><b>규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609호(정준호 의원 등 10인)] ('24.11.15.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23년도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민원 7,000여건 중 1,000여건 이상이 견본주택과 영업인이 나눠준 광고물 등이 실제 주택과 크게 다른 일명 '사기분양'에 관한 것일 정도로 '사기분양'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사기분양'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서야 해결되는 등 피해자들에게는 입주 지연, 장기간의 소송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극심한 피해로 연결되는 상황이나, 견본주택과 광고물에 대해 정작 실제 사업계획</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승인된 설계도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분쟁 발생 시 행정조치에 대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기에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방향)</b> 건본주택이 실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할 주체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부득이하게 설계도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업주체가 이를 고지하도록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60조제1항 등 개정)</li> </ul>
「국가 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608호(이종배 의원 등 11인)] (‘24.11.15.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경제성 기준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주로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어려워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b>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수도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개선(안 제38조제6항 신설 및 제38조의3제2항)</li> </ul> </li> </ul>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598호(장동혁 의원 등 13인)] (‘24.11.14.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경우에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인구소멸 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 필요</li> <li>- <b>(제안방향)</b>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조사 방법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4조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li> </ul> </li> </ul>
「하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593호(김성원 의원 등 10인)] (‘24.11.14.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 중(‘20년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 47.24%, 국가하천 정비율 79.75%임과 더불어 최근 6년간 지방하천 홍수 피해액 2,731억원, 국가하천 홍수 피해액 529억원)임과 더불어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읍 미호강 사례처럼 지방하천, 국가하천 구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이분화돼 재해가 반복되기에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b>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안 제7조의2, 제25조, 제27조의2)</li> </ul> </li> </ul>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568호(황윤하 의원 등 12인)] (‘24.11.14.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의 경우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빈집정비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빈집실태조사 5년마다 실시, 빈집정비사업에 따라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빈집 매입 등)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빈집이 많은 지역들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과 함께 빈집정비사업은 지자체 예산 제약하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b> 국가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4조제4항 신설)</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건설산업기본법」</p> <p><b>규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537호(복기왕 의원 등 10인)] (‘24.11.1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알선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건설 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고용만 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어려움이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의2제1호 신설)</li> </ul> </li> </ul>
<p>「해상풍력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511호(김정호 의원 등 15인)] (‘24.11.13.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현행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3년 말 기준 9%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23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17,390MW로 ‘14년 대비 10년간 191% 순증하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151MW로 전체 발전설비 144,415MW의 1.5% 수준에 그치는 실정인 점과 더불어 삼면이 바다인 지형적 특성과 풍력발전산업 연관 제조업의 기술력을 함께 고려할 때 해양풍력발전의 보급실적 개선 필요</li> <li>- (제안이유②)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①) 국가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중장기 해상풍력발전시설 보급목표 수립하며,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의 책무 규정(안 제3조)</li> <li>- (제안방향②)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 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 설치(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li> <li>- (제안방향③)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예비지구의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은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li> <li>- (제안방향④) 산업통상자원부에게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해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에게 접속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및 제17조)</li> <li>- (제안방향⑤)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li> <li>- (제안방향⑥)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li> <li>- (제안방향⑦)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가 해상풍력발전 시설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할</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p>	<p>수 있도록 하고, 착공신고·착공인가 등의 절차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접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 등을 규정(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481호(이언주 의원 등 11인)] (24.11.12.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최근 선진국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발전설비는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도권에 반도체 등 초전력 사업이 집중되면서 추가 전력수요가 발생하여 전력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더 빠르고 더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인 대규모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한국 전력공사 중심의 전력망 개발사업은 투자재원 부족과 송전탑 입지 선정 등에 따른 주민민원 발생으로 인해 기준공된 송전망의 경우 10년 이상 지연된 사례가 발생했고 서남권의 경우 송전망 부족으로 출력제어량과 시간이 급증하는데도 입지 선정 및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 지연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①) 이 법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단,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5조)</li> <li>- (제안방향②)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안전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축(안 제6조 및 제7조)</li> <li>- (제안방향③)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해 기초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개발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li> <li>- (제안방향④)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 선정에 관한 특례, 「전원개발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대한 특례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규제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li> <li>- (제안방향⑤)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를 두며, 개발사업구역 주변 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지원 및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사업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li> <li>- (제안방향⑥)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비용의 지원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그 설비의 지중화를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22조 및 제23조)</li> </ul> </li> </ul>
<p>「정보통신공사업법」</p> <p><b>규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463호(박형수 의원 등 12인)] (24.11.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 제63조의2, 제63조의3 신설 등)</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석면안전관리법」</p> <p><b>규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462호(박해철 의원 등 24인)] (‘24.11.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업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와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석면 추정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감리인의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 강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안 제30조제5항, 제30조의4, 제30조의6, 제31조제4항, 제47조의2, 제49조제3항 등)</li> </ul> </li> </ul>
<p>「정보통신공사업법」</p> <p><b>규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454호(박형수 의원 등 12인)] (‘24.11.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 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li> </ul> </li> </ul>
<p>「공공주택특별법」</p> <p><b>규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451호(임종득 의원 등 10인)] (‘24.11.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령 및 舊 「임대주택법」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해당 법인들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하되, 구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건설된 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이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민간택지에 건설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민간 자율로 조기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격 산정의 신뢰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통일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를 구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50조의2제3항 등)</li> </ul> </li> </ul>
<p>「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p> <p><b>규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413호(이재관 의원 등 16인)] (‘24.11.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나 충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고, 화재의 특성상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고 그 피해가 심각해 소화설비 시설 설치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에 이를 보완</li> <li>- (제안방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해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 설치 의무화(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도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386호(문진석 의원 등 11인)] (‘24.11.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제35조)은 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타공사(도로공사 외의 공사)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원인자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해 인접 지역이 분리되는 문제를 해소키 위해 굴다리 등 통로를 신설한 후 그 통로의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타 공사 시행자의 부담으로 해당 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것은 민간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추진</li> <li>- (제안방향)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건설로 인해 타 공사의 시행자나 타 행위를 한 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li> </ul> </li> </ul>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384호(박정훈 의원 등 11인)] (‘24.11.8.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도심 철도는 과거 도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현재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제약하는 등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의 경우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 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와 유휴공간을 주민편의 시설로 전환해야 하나 막대한 사업비 부담 및 비용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해소 필요</li> <li>- (제안방향①) 도시철도지하화 사업 및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3조)</li> <li>- (제안방향②)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4조)</li> <li>- (제안방향③) 광역지자체가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6조)</li> <li>- (제안방향④)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 및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li> <li>- (제안방향⑤) 국토교통부 및 광역지자체에게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국공유재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li> <li>- (제안방향⑥)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li> <li>- (제안방향⑦)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건축물 건축상의 특례, 부담금 등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안 제12조, 제16조, 제17조)</li> </ul> </li> </ul>
「공공주택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374호(정준호 의원 등 14인)] (‘24.11.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광역지자체에게 위임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권한을 광역지자체에게 위임하면서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실질적으로는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권한위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더욱 넓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에 이를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방향)</b>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광역지자체에게 위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li> </ul>
「지방세 특례 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358호(윤건영 의원 등 11인)] (‘24.11.7.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의 확산을 목적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고, 신축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받은 경우 취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내진 성능 확보율은 여전히 매우 저조하여 지진 피해 예방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에 일몰되어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기에 개정 필요</li> <li>- <b>(제안방향①)</b>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신축뿐만 아니라 대수선 등을 통해 인증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li> <li>- <b>(제안방향②)</b>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건축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여 내진 성능 확인을 받는 경우,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 부여(안 제47조의4)</li> </ul> </li> </ul>
「지방 공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357호(정준호 의원 등 10인)] (‘24.11.7.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개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되어 있으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다른 지방공사에 비해 사업 특성상 대규모 자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출자·투자·사채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현행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도시개발공사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의 사업경쟁력도 약화되고 있어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b>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출자·투자·사채발행 등 자금 운용 관련 규제 수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안 제54조제3항, 제64조의2제6항, 제65조의3제2항·제3항, 제68조제3항, 제71조의5 신설)</li> </ul> </li> </ul>
「공공주택 특별법」 <b>규제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344호(정준호 의원 등 16인)] (‘24.11.7.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지구 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별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30% 이하가 되도록 규정 중이나, 최근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나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어 공공에서의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로는 현재의 주택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b>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공주택별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 45% 이상, 공공분양주택 35% 이하로 공급되도록 규정(안 제2조제2호)</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321호(복기왕 의원 등 10인)] (24.1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일부 구간은 원인가 부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큼에 따라 사업 진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원인가요구에 의한 사업 중 국비의 일부 부담 규정이 법령상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기에 개정 필요</li> <li>- (제안방향)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사업 등 기존 철도노선을 연장 또는 개량하여 신규 노선으로 활용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기존 역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비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하고, 이에 해당하는 역이 환승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원인가와 국가 간 비용에 대한 일부 부담 비율의 근거 명확화(안 제21조제4항)</li> </ul> </li> </u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319호(문진석 의원 등 10인)] (24.1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을 완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제공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같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전·후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토지가치 상승분의 대부분을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민간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거나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관련 규정 명확화 필요</li> <li>- (제안방향) 과도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부과 방지 및 민간의 신속한 사업 집행 지원을 위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제공 또는 비용납부의 범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그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안 제52조제1항)</li> </ul> </li> </ul>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b>규제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311호(한민수 의원 등 13인)] (24.1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현행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분양과 관련하여 현재 분양대행업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사업자와 대항자 간 분쟁이나 책임 전가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달리 분양대행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분양대행업을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개정 필요</li> <li>- (제안이유②) 거짓·과장된 판촉·광고, 분양 강요 등으로 부당하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피해 예방 한계가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 확립을 위해 분양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짓·과장된 판촉·광고, 분양 강요 등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 마련(안 제6조의3, 제6조의4 신설 등)</li> </ul> </li> </ul>
「골재 채취법」  <b>규제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297호(윤영석 의원 등 10인)] (24.1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골재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골재를 공급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불비되어 있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화 필요</li> <li>- (제안이유②) 공유수면 및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 골재채취 허가를 관장하는 법률과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수입을 관장하는 법률이 상이하여 수입의 원인에 부합한 적재적소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에 허가 권한을 가진 자의 의지에 반해 정책 수단이 결여되어 의지만으</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로는 양질의 골재수급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에 공유수면 및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함에 따른 수입 중 일부의 집행을 골재채취 허가 법률로 이양하여 골재수급 안정과 주변 환경보전, 민원 해소 등에 직접 기여 유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③)</b> 국내 골재 수급 환경은 과거 하천·바다 등에서 채취하는 천연골재 위주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암석을 선별·파쇄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자원의 순환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어 골재생산을 위한 암석 등의 수급이 매우 중요하나, 최근 건설현장 공사가 감소하고 있고, 발주자 또는 발주청에서 건설공사 공기 등을 이유로 암석 등을 단순 매립·성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암석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선별·파쇄 골재원으로 가급적 활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연환경 훼손 예방, 국토자원의 보전 및 골재수급의 안정 등을 도모 필요</li> <li>- <b>(제안방향①)</b> 현행 규정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있으나, '품질검사를 받아 품질기준에 미달된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제8호의3 신설)</li> <li>- <b>(제안방향②)</b>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시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점용료 및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수입 중 일부를 골재채취허가법률로 이양하여 허가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2조 및 제34조의3, 제34조의4제2항 신설)</li> <li>- <b>(제안방향③)</b>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연구를 위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2조의4제8항 신설)</li> <li>- <b>(제안방향④)</b> 골재 공급원의 고갈 및 축소 등에 따라 수급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선별·파쇄 암석 자원에 대한 골재용로서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4조의5)</li> </ul>
<p>「지진·화산 재해 대책법」</p> <p><b>규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276호(김기현 의원 등 11인)] ('24.11.5.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최근 이상기후로 강우가 지속하여 옹벽을 지지하고 있는 지반이 약해져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옹벽의 훼손 또는 붕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 반해 옹벽의 경우 현행법상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b>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건축법」에 따른 옹벽을 추가(안 제14조제1항제1호)</li> </ul> </li> </ul>
<p>「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p> <p><b>규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252호(유영하 의원 등 11인)] ('24.11.5.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填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가 어렵기에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b> 현행법에 당사자 자료 제출 명령 제도 확대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의무 강화,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9조)</li> </ul> </li> </ul>
<p>「하도급법」</p> <p><b>규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247호(유영하 의원 등 11인)] ('24.11.5.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25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결 전제 법안</li> <li>- <b>(제안이유①)</b>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填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가 어렵기에 개선 필요</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②)</b>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현행법상 규정들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정들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적 집행도모 및 향후 개정시차 등 문제 예방 필요</li> <li>- <b>(제안방향)</b> 현행법에 당사자 자료 제출 명령 제도 확대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의무 강화,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29조, 제35조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삭제)</li> </ul>
<p>「해상풍력 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218호(조경태 의원 등 12인)] (‘24.11.4. 법률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①)</b> 해상풍력발전은 좁은 국토 여건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 등 기존 해역 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시 주요 조업해역 상실로 인한 어업 피해와 수산업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개선 필요</li> <li>- <b>(제안이유②)</b> 해상풍력 보급 측면에서도 제한된 입지와 전력계통을 선점하여 매매 차익을 노리는 소위 가성(假性) 사업자 문제로 인해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과 공유재인 해양공간의 체계적 이용과 관리,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과 다른 획기적 제도와 해상풍력산업 지원 방안의 도입 시급</li> <li>- <b>(제안방향)</b>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수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여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해상풍력 발전의 전 과정의 행정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해상풍력에 특화된 법체계를 마련하며,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li> </ul> </li> </ul>
<p>「건설산업 기본법」</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217호(복기왕 의원 등 14인)] (‘24.11.4.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건설노동시장은 임시·일용 근로자 중심의 고용체계, 단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해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건설산업 현장 기피현상 및 건설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 불법 재하도급, 불법 외국인 고용 등이 심화되고 이는 다시 건설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한 보상 체계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①)</b>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를 분명하게 적도록 규정(안 제22조제7항·제8항)</li> <li>- <b>(제안방향②)</b>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직종별로 산정하여 고시(안 제38조의5제1항)</li> <li>- <b>(제안방향③)</b> 공공 건설공사 및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안 제38조의5제4항)</li> <li>- <b>(제안방향④)</b>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구분 작성 의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내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 명시 의무 또는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1조제4호 및 제82조제1항제8호)</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근로기준법」</p> <p><b>규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214호(이용우 의원 등 10인)] (‘24.11.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체불하거나,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도급하는(건설공사 발주 포함) 도급계약에 대해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임금 지급일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지급하도록 규정,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안 제44조 등)</li> </ul> </li> </ul>
<p>「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p> <p><b>규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211호(홍기원 의원 등 12인)] (‘24.11.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 시·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학교의 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li> <li>- (제안방향)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4조제2항, 제11조 신설)</li> </ul> </li> </ul>
<p>「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b>규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154호(오세희 의원 등 11인)] (‘24.10.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나 시스템 구축은 미비한 사항이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li> </ul> </li> </ul>
<p>「공공주택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138호(복기왕 의원 등 11인)] (‘24.10.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고, 사업주체의 재정 부담 완화 등 이점으로 선분양이 다수 활용되고 있으나, 선분양의 경우 부실시공, 금융비용 소비자전가 등 수분양자 피해뿐만 아니라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 투기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어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 수행 필요</li> <li>- (제안방향)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주택건축 전체공정의 80% 이상 이후 입주자 모집)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안 제48조제3항 신설)</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국가 재정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107호(송언석 의원 등 10인)] ('24.10.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그간 물가상승률, 국가경제·재정·사업 규모의 확대를 반영치 못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li> <li>- (제안방향)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600억원 이상으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을 1천억원 이상으로 각각 두 배씩 상향(안 제38조제1항)</li> </ul> </li> </ul>
<p>「상생 협력법」</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103호(송재봉 의원 등 10인)] ('24.10.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현행법은 공급원이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에 현행법상 수탁기업협의회가 위탁기업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인 수탁·위탁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수탁기업에 약정 갱신 요구권을 부여할 필요</li> <li>- (제안이유②)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인력 마련 필요</li> <li>- (제안방향①)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안 제17조제2항 신설)</li> <li>- (제안방향②) 수탁기업협의회가 구성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조정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li> <li>- (제안방향③) 수탁기업협의회가 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 등은 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17조제5항 신설)</li> <li>- (제안방향④) 계속적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이 약정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21조의4 신설)</li> <li>- (제안방향⑤) 중소벤처기업부에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을 두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도록 규정(안 제27조의2 신설)</li> </ul> </li> </ul>
<p>「근로 기준법」</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100호(정혜경 의원 등 11인)] ('24.10.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의 사례와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와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임금 지급일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지급하도록 규정</li> <li>- (제안방향②)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44조 등)</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하도급법」</p> <p><b>규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091호(김정호 의원 등 14인)] (‘24.10.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4년 2월 개정되었으나, 현재의 법적 체계하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러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기술탈취와 관련된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또는 제공 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원사업자가 부인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li> <li>- (제안방향②)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게 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안 제25조의3, 제35조의 6 및 제35조의 7 신설)</li> </ul> </li> </ul>
<p>「산업안전보건법」</p> <p><b>규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084호(이학영 의원 등 10인)] (‘24.10.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낮기에 개선 필요</li> <li>*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자가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 및 식중독의 원인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li> <li>- (제안방향)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169조제2호의2 신설 등)</li> </ul> </li> </ul>
<p>「국가재정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072호(박수영 의원 등 12인)] (‘24.10.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 재정규모 확대 및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 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안 제38조제1항)</li> </ul> </li> </ul>
<p>「건설산업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061호(엄태영 의원 등 10인)] (‘24.10.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경색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급랭 등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부동산 사업장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기관이 부재하여 사업장 정상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에 현행법인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경우 PF대출 등을 받아 적기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방향①)</b>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에 조합원의 건설업 운영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조합원 외에 시행사 등에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4조제1항)</li> <li>- <b>(제안방향②)</b> 공제조합 사업 내용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 발주자에게 보증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6조제2항제3호 신설)</li> <li>- <b>(제안방향③)</b> 공제조합이 안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발주자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증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57조의2제1항)</li> <li>- <b>(제안방향④)</b> 공제조합이 안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발주자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 상태 및 사업 이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1조)</li> </ul>
<p>「조세특례제한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045호(이인영 의원 등 10인)] (‘24.10.30.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탁기업을 위해 납품대금을 조정한 위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없으므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li> <li>- <b>(제안방향)</b>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안 제8조의3제4항 신설)</li> </ul> </li> </ul>
<p>「하도급법」</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5029호(이인영 의원 등 11인)] (‘24.10.30.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최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었으나, 노무비를 하도급대금 연동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여전히 노무비 변동분을 부담하여야 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기에 노무비 변동 시에도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도록 규정할 필요</li> <li>- <b>(제안방향)</b>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등)</li> </ul> </li> </ul>
<p>「건설기술진흥법」</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4993호(손명수 의원 등 12인)] (‘24.10.29.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①)</b> 현행법에서는 발주청이 대형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일부를 발주청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엔지니어링은 통상적인 건설사업과 달리 발주청의 승인만 받으면 제한없이 하도급이 가능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가 높은 측면이 있으며, 하도급의 원칙적 허용에 따라 발주청 및 수급인의 고유 업무를 하도급하여 특정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특정업체의 상주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발주청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의 총체적인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b>(제안이유②)</b> 기타 건설기술 진흥과 관련한 법률 미비점 개선</li> <li>- <b>(제안방향①)</b>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금지하며,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하도급 요건의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며, 하도급 제한을 특정 사업자와 하도급계약할 것을 요구하거나 상주기술인을 현장에서 이탈하도록 요구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31조제2항제2호,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36조 및 제91조제2항제1호의2 신설)</li> <li>- <b>(제안방향②)</b> 「형법」 개정(‘18.1.7.)에 따라 벌금형도 집행유예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설기술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행유예를 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안 제39조제5항제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방향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해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 하도록 규정(안 제77조제1항 후단 신설)</li> </ul>